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 번호 | 409 |
|----------|-----|

2019년 3월 6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2월 1일, 이호대 의원 외 9명
- 나. 회부일자 : 2019년 2월 7일
- 다. 상정일자 : 제28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9년 3월 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이호대 의원]

가. 제안이유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서울시가 관리하는 유료 공원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가. 인용 법령의 표기 오류를 수정함 (안 제20조제1항제5호).
- 나. 의사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사상자 가족의 공원 입장료를 면제함 (안 제20조제1항제8호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 김 선 희)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조례 개정안은 의사상자 등에게 서울시가 관리하는 입장료를 부과하는 공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입장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의사상자 현황과 지원의 범위

- 의사상자(義死傷者)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본인과 가족에게 그 희생과 피해 정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등급을 정하고 있음.
- 2018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의사상자는 804명이고, 이중 서울시 거주자는 146명, 경기도 150명임.

- 의사상자 등 에게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 박물관 및 수목원 등 국가가 운영하는 일부 시설의 요금을 감면하고 있음. (첨부 1 참고)
- 서울시에는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특별 위로금 지급과 기념포석을 설치하는 것에 불과함.

2) 입장료 부과시설과 면제 기준

- 서울시 공원 중 입장료를 부과하고 있는 곳은 서울대공원의 동물원과 테마가든이 유일하며, 2019년 3월 현재 서울식물원 입장료 부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임.
- 공원의 입장료는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 조례 제20조제1항에는 입장료 면제 대상, 제2항에는 입장료 감면대상을 명시하고 있음. (첨부 2 참고)
- 동 조례 제20조제1항을 살펴보면 국민, 외교사절단,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조사연구자 등 공무수행하는 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참전유공자에게 입장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의사상자는 해당사항이 없음.
- 안 제20조제1항제8호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원 입장료 면제해주는 것은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시민의 귀감이 되도록 그 뜻을 기리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3)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르면 법령의 본문 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명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구분과 구별하도록 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제20조제1항제5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인용 법령의 표기를 바로잡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수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 다만 동 조례 제12조제3호에 ‘「건축법」 시행령’으로 표기된 것이 있는 바, 이것도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건축법 시행령」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법령명 포기 방법을 수정
- 서울식물원 입장료 부과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관련 409 |
|----------|-----------|

제안년월일 : 2019년 3월 6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르면 법령의 본문 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명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구분과 구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령명 수정
- 서울식물원의 집중 관리구역에 입장료를 부과하도록 수정

2. 주요 골자

- 제12조제3호에 ‘「건축법」 시행령’으로 표기된 것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건축법 시행령」으로 수정
- [별표 1] 공원입장료 부과시설에 서울식물원을 추가하고, 어른 5천원~1만원, 청소년 4천원~7천원, 어린이 3천원~5천원으로 요금의 범위를 지정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3호 중 “「건축법」 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안 제20조제2항제2호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을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 다만, 서울대공원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을 포함한다” 으로 한다.

[별표 1]에 공원입장료를 받는 시설에 “서울식물원”을 추가하고, 요금받는 구간은 “온실 및 주제정원”으로 한다. 요금은 어른 1회 5,000~10,000원, 청소년 1회 3,000~7,000원, 어린이 1회 2,000~5,000원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p>제12조(녹지점용허가의 세 부기준) 법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 기 준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 3. ----- ---- 「건축법」 시행령 제15 조제5항제3호 ----- -----.</p> <p>제20조(요금의 감면)</p> <p>① (생략) 1. ~ 7.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 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카 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p> <p>3. ~ 4. (생략) ③ (생략)</p> | <p>제12조(녹지점용허가의 세 부기준) ----- ----- -----.</p> <p>1.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p> <p>제20조(요금의 감면)</p> <p>①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p> <p>3.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 <p>제12조(녹지점용허가의 세 부기준) ----- ----- -----.</p> <p>1. ~ 2. (개정안과 같음) 3. ----- ---- 「건축법시행령」 제15 조제5항제3호 ----- -----.</p> <p>제20조(요금의 감면)</p> <p>① (개정안과 같음) 1. ~ 7.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다 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 족 다만, 서울대공원은 경기 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 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 원카드에 등재된 가족을 포 함 한다 3. ~ 4.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p> |

| 현행 | | | 개정안 | | | 수정안 | | | |
|--------------------------|----------------------------|---------|--------------------------|----------------------------|---------|--------------------------|--------|--------------|-------------|
| 〔별표 1〕 공원입장료(제15조제1항 관련) | | | 〔별표 1〕 공원입장료(제15조제1항 관련) | | | 〔별표 1〕 공원입장료(제15조제1항 관련) | | | |
| | | | (현행과 같음) | | | | | | |
| 공원별 | 사용기준 | 금액(원) | 공원별 | 사용기준 | 금액(원) | 공원별 | 사용기준 | 금액(원) | |
| 서울대공원 | 동물원 | 어른 1회 | 3,000~6,000 | 동물원 | 어른 1회 | 3,000~6,000 | 서울대공원 | 어른 1회 | 3,000~6,000 |
| | | 청소년 1회 | 2,000~4,000 | | 청소년 1회 | 2,000~4,000 | | 청소년 1회 | 2,000~4,000 |
| | | 어린이 1회 | 1,000~2,000 | | 어린이 1회 | 1,000~2,000 | | 어린이 1회 | 1,000~2,000 |
| | 테마가든 (어린이 동물원 및 장미원) | 어른 1회당 | 2,000~4,000 | 테마가든 (어린이 동물원 및 장미원) | 어른 1회당 | 2,000~4,000 | 서울대공원 | 어른 1회당 | 2,000~4,000 |
| | | 청소년 1회당 | 1,500~3,000 | | 청소년 1회당 | 1,500~3,000 | | 청소년 1회당 | 1,500~3,000 |
| | | 어린이 1회당 | 1,000~2,000 | | 어린이 1회당 | 1,000~2,000 | | 어린이 1회당 | 1,000~2,000 |
| | | | | | | 서울식물원 | 어른 1회 | 5,000~10,000 | |
| | | | | | | | 청소년 1회 | 3,000~7,000 | |
| | | | | | | | 어린이 1회 | 2,000~5,000 |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건축법」 시행령”을 “「건축법시행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5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을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 다만, 서울대공원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을 포함 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에 공원입장료를 받는 시설에 “서울식물원”을 추가하고, 요금받는 구간은 “온실 및 주제정원”으로 한다. 요금은 어른 1회 5,000~10,000원, 청소년 1회 3,000~7,000원, 어린이 1회 2,000~5,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2조(녹지점용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제3호 -----.</p> <p>제20조(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p> <p>6. ~ 7. (생략)</p> <p><신 설></p> <p>②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p> <p>③ (생략)</p> | <p>제12조(녹지점용허가의 세부기준)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 제3호 -----.</p> <p>제20조(요금의 감면) ①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p> <p>6. ~ 7. (현행과 같음)</p> <p>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p> <p>②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 다만, 서울대공원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을 포함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원입장료(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1] 공원입장료(제15조제1항 관련)

| 공 원 별 | | 사 용 기 준 | 금 액 (원) |
|-----------------------|---|------------|-------------|
| 서 울 대 공 원 | 동 물 원 | 어 른 1회 | 3,000~6,000 |
| | | 청 소 년 1회 | 2,000~4,000 |
| | | 어 린 이 1회 | 1,000~2,000 |
| | 테 마 가 든 (어 린 이 동 물 원 및 장 미 원) | 어 른 1회 당 | 2,000~4,000 |
| | | 청 소 년 1회 당 | 1,500~3,000 |
| | | 어 린 이 1회 당 | 1,000~2,000 |

| 공 원 별 | | 사 용 기 준 | 금 액 (원) |
|---|------------------|--------------------------------|--|
| 서 울 대 공 원 | 동 물 원 | 어 른 1회 | 3,000~6,000 |
| | | 청 소 년 1회 | 2,000~4,000 |
| | | 어 린 이 1회 | 1,000~2,000 |
| 테 마 가 든 (어 린 이 동 물 원 및 장 미 원) | 어 른 1회 당 | 2,000~4,000 | |
| | 청 소 년 1회 당 | 1,500~3,000 | |
| | 어 린 이 1회 당 | 1,000~2,000 | |
| 서 울 식 물 원 | 온 실 및 주 제 정 원 | 어 른 1회 청 소 년 1회 어 린 이 1회 | 5,000~10,000 3,000~7,000 2,000~5,000 |